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조정〉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45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조정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4
다. 검토의견	9
라. 관계 기관 의견	1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8. 1.
- (3) 회 부 일 : 2025. 8.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조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생략)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 ----- ----- ----- -----.
<신설>	④ 제3항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제88조에 따라 계산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달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한 특례)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 현행법 제92조¹⁾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 등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데 따른 가입이력 상실을 보충하고 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98년 12월 법률 제562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당초에는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0년 12월 법률 제17774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

1)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10년 미만의 범위(최대 119개월)에서만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인원은 약 83만명임.

< 최근 5년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현황: 2020~2024년 >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신청 인원	신청 건수	추납보험료 (고지액 기준)
2020년	260,116	271,303	1,808,592
2021년	209,006	215,460	1,399,191
2022년	143,765	148,439	969,117
2023년	84,627	87,644	589,972
2024년	133,894	138,459	902,993
계	831,408	861,305	5,669,865

자료: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려는 가입자는 현행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2)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에 관하여는 ‘반납금의 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되며,³⁾

2)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11~15일경 추납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되, 가입자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과 동시에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시발행고지서’를 발급하여 추납보험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컨대 가입자가 2025년 9월 중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0월 31일을 납부 기한으로 기재한 고지서를 2025년 10월 11~15일경 발송하되, 해당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2025년 9월 중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수시발행고지서를 발급하여 추납보험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때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최대 119개월)’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은 모두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데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됨.⁴⁾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4)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는 가입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현행법 제92조제5항에서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였더라도 추납보험료를 미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납보험료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전단),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데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후단).

□ 한편 가입자는 최대 60회의 범위에서 추납보험료를 분할납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할부이자 부담)할 수 있는데,⁵⁾

분할납부의 경우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산정되고, 기본연금액은 매월 ‘분할납부분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됨.

- 예를 들어, 2023년 3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서 추납보험료를 60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5)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③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2. 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2023년 3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9%)’로 산정한 추납보험료를 2023년 4월부터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되,

2023년 4~12월의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42.5%의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2024년 1~12월의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42%의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되며, 2025년 1~12월의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41.5%의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⁶⁾

2026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의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43%의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됨.⁷⁾

6)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7)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월은 현행대로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은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

< 추납보험료 및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월: 현행 vs.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추납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좌동)
	보험료율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
기본연금액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좌동)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보험료율이 9%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와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같은 시점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 수준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었으나,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1.5%p 일시 인상되어 2026년부터 43%로 적용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조합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의 신청 시기에 따라

일반 가입자에 비하여 유리해지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일반 가입자의 경우 그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이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대하여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보험료율 9%·명목소득대체율 41.5%]와 [보험료율 9.5%·명목소득대체율 43%]의 조합이 적용되지만,

2025년 12월 중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2026년 1월 중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2025년 12월)’의 보험료율과 ‘추납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달(2026년 1월)’의 명목소득대체율에 따라 일반 가입자는 선택할 수 없는 ‘덜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9%·명목소득대체율 43%]의 조합을 적용받게 됨.

□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납보험료와 기본연금액의 산정 기준월을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신청 시기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추납보험료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면, 매 분할납부분의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분이 산정되므로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예정한 보험료율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납보험료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과 같이 추납보험료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유지한다면, 2025년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2026년 이후의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43%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안 부칙에는 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어느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서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가입자에 대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될 경우 2026년 이후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는 9%의 보험료율과 43%의 명목소득대체율이 적용됨.

□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중 “납부기한일”은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현행법령에 규정된 ‘납부 기한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현행법 제17조제4항, 제57조제3항 본문, 제57조의2제1항 전단, 제78조제4항, 제88조제5항 후단, 제88조의2제1항 본문, 제89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92조제6항,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28조제3항제2호 등에서 ‘납부 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2026년에는 현행 9% 대비 0.5%p 인상된 9.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시점*과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성실납부자에 비하여 유리하여질 수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는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을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2025년 말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유리하게 됨

** 추납보험료는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에 60개월 분할납부 신청 시 보험료율 인상 없이 9%의 보험료율로 계속 납부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 수용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